

법률서비스의 수급상황과 전망, 그것이 로스쿨에 미치는 영향

한 상 희*

목 차

- | | |
|--------------------------------------|-----------------------------------|
| I. 들어가기 | III. 법률서비스 수급의 변동과 로스쿨 |
| II. 법률서비스의 수급상황과 전망 | 1.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와 교육이념 |
| 1. 법조관료 체제의 문제점 — 천박한
법도구주의 | 2. 타산지석 : 미국의 예 |
| 2. 법률서비스 수요의 변화 — 송무사
건의 추이를 중심으로 | 3. 현실 : 한계 |
| 3. 현 법률서비스 시장의 문제점 | 4. 무엇을 할 것인가 : 당장 시급한 과
제 두 가지 |
| | IV. 나가면서 |

I. 들어가기

현대사회의 법체계는 대부분의 경우 일종의 직업군으로 특화된 사람들 — 이를 넓은 의미의 법률전문직(legal professions)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에 의하여 운영된다. 법관과 검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변호사라는 직업군은, 사법부뿐만 아니라 의회, 행정부 기타 국가의 법규범이 그 제어력을 미치는 곳이면 어디서든 발견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게다가 공증인이나 법무사 등과 같은 유사법조 또한 이러한 법질서의 한 부분을 이루면서 국가법과 일상의 개인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다른 직업들과는 달리 특유한 경계를 설정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만 그 직업에의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중사를 허용하면서, 특별히 구축된 동업조합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윤리 준칙에 따른 실무행태의 통제를 하기도 한다. 또 한편으로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그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상층의 지위에 자리잡고 일반인에 대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사회·경제적 특권들을 누리기도 한다.

이들 법률전문직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법작용을 전제로 한다. 법의 기능이 범죄 등 일탈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사회질서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함에 있다고 한다면, 법률서비스는 개개의 사람들을 이러한 법의 기능으로 연결하는 일종의 인터페이스와 같은 위상을 가진다. 즉, 그것은 다른 일반적인 서비스와는 달리, 국가의 공권력 현상(즉 법현상)의 한 부분으로서의 성격을 띠면서 국가의 법권력 혹은 공권력과 국민의 생활 및 그것의 토대를 구성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연계하는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의 법률서비스는 시장의 안정화 및 효율화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WTO나 FTA 등에서 보듯 세계화의 추세는 국제통상질서의 구축으로 나아가고,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유효하고도 안정적인 통상법의 형성을 요구한다. 일종의 신입헌주의(neo-constitutionalism)라 불리는 국제통상법의 보편법화 현상이 그것이다. 더불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치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에서는 시장중립적이고 경쟁촉진적인 법과 제도의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장의 요청은 법률서비스로 하여금 경제와 경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자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자원 중의 하나로 규정하게 된다. 종래처럼 질서유지 혹은 분쟁의 해결이나 권리의 보장이라는 차원을 넘어 이제는 법률서비스가 시장의 작동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이자 경제 성장의 추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7년 7월 전격 통과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로스쿨 체제는 이런 법률전문직 및 법률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의미규정에 바탕을 둔다. 그것은 1970년대 개발독재시대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획일적 법운용을 지향하였던 법조관료(law bureaucrats) 체제를 벗어나 다양하고 다원적인 법발견(혹은 법창조)을 가능케 하는 법률전문가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대법원 등 최고권력기관의 의지를 정점으로 구성되는 단일하고도 위계적인 사법권력의 대행자로서의 법률가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사건을 계기로 시민사회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법감정과 법의지들을 취합하고 수렴하며 이로부터 법적 정의를 구성해 내는 법률서비스의 판매자로서의 법률가를 양산하는 체제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체제 수준의 변화를 기대하는 일면에서는 일제 이래 한 세기에 걸친 법조관료주의에 길들여진 우리 법조인 집단의 기득권에 의하여 잠식될지도 모르는 돌연변이형 로스쿨 체제에 대한 우려도 병발한다. 분명, 식민통치나 독재 혹은 개발독재식의 법운용을 넘어서야 할 시대적 변혁이 요청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가지는 한계는 우리의 현 사회가 추구하는 법치의 실현 혹은 세계화시대에 있어서의 국가경쟁력의 강화 등의 국가목표를 저버리기에 충분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며, 이미 그 약간의 조짐조차 엿보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런 선이해를 바탕으로 시작한다. 제도의 변화는 시작되었으되 여전히 기득권세력의 저항은 완강한 현실에서 새로운 제도에 작용하는 제반의 역관계는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부터 파생되는 애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극복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II. 법률서비스의 수급상황과 전망

1. 법조관료 체제의 문제점 — 천박한 법도구주의

우리나라에서의 법은 일제시대의 전체주의와 해방 이후의 권위주의적 정치구조와 맞물려 철저하게 억압적인 기능을 수행해 왔다. 법은 오로지 권력의 흐름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고 따라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대상 또는 도구로서만 존재하였다. 일제에 의하여 그 토대가 구축된 우리의 법담론은, 해방이 되면서 국가권력이 독자적으로 또는 정경유착의 방식에 의한 경제권력과의 중첩적 관계를 통하여 시민사회에 일정한 가치와 이념을 부과하는 형태로 형성되어 왔었고 그것이 시민사회를 억압하는 정당화기제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비록 법치주의의 외관을 이용하여 시민사회의 요구나 이해를 배제하고 그 법을 통하여 또는 그 법의 담론을 전용할 수 있는 경제영역에 의하여 시민사회를 조작하고 통제하고자 하였다. 철저히 관료적 모델에 의하여 충원되고 관리되는 법조는 그 구체적인 집행의 역할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법조의 진입규제와 독점체제,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성은 이렇게 법이 전단적 권력의 수단으로 기능할 때 이루어진다. 우리의 법조, 특히 변호사 집단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도전받지 않는다는 든든한 방패 속에서 역대 정권들이 누려 왔던 그 권력의 일각을 향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국가에 의하여 권력화된 법을 자신의 이익으로 독점하면서, 그것을 국민으로부터 유리시켰다.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법조가 법에 관한 지식과 논리, 기술을 전유하면서 그것을 주권자 혹은 소비자로서의 국민들로부터 차폐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전문가 집단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법조에서는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로 법조의 충원·양성을 국가가 관리하고 이들을 다시 관료주의적 계층구조 속에서 승진을 미끼로 순차시키는 과정에서 “한술밥을 먹는 한 식구”의 관념이 구성되고, 이로부터 그들은 하나의 사회적 신분으로 고착된다. 법조 내에서 불문율이 되어 버린 몇 기 출신이니, 전관예우니, 또는 승진에서 ‘탈락’하면 옷 벗는 관행이니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신분적 동일자의식과 그 관행을 예증한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법’을 통용시킨다.¹⁾

이런 법조계급의 창출과 그들의 법독점은 다시 우리 사회의 법문화에 의해 강화된다. 전통적으로 네 편과 내 편의 경계구획을 중심으로 특수주의적 법배려를 요청하는 법문화 — ‘그럴 수도 있다’든가, ‘늬우쳤으니 앞으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안 됐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렇지, 저렇게 대들 수가 있나’ 등의 개별화되는 동시에 확장된 집단의식이 법규범의 보편적, 일반적 적용이라는 요청을 능가하는 법문화 — 에서 “예외적 봐주기”를 이끌어 내는 존재로서의 법조인, 특히 변호사의 역할이 그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변호사는 일종의 지대(rent)추구를 업으로 삼는다. 학연이나 지연, 혈연과 같은 귀속적 속성에 의거한 특수주의적 법배려를 요구하는, 그럼으로써 자신의 인적·경제적 확장을 통하여 상대방을 국외자, 즉 패소자로 만드는 행태가 그것이다. 변호사들은 전통적 사회에서 나타나는 판정자와 분쟁당사자 간의 인적 단절현상을 메우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들은 고객과의 인적인 단절을 수임료로써 대치하면

1) 일전에 한동안 논의되었던 법조직역 확대는 이 때문에 무의미한 것이다. 이들이 형성하는 집단경계는 그 견고성으로 인하여 소위 유사법조직역들까지도 그 경계 내로의 유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무사나 변리사, 회계사, 중개사, 또는 사내 법무직, 심지어 공무원까지도 사법시험 동기 또는 사법연수원 동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조’의 관념에서 벗어나 있고, 바로 이러한 폐쇄성이 역으로 법조의 직역 확대 자체를 막게 되는 것이다. 환언하자면, 이러한 유사법조직으로의 진출은 바로 그 법조인 집단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게 되고 이는 마치 조선시대의 족보할명과 같은 축출(ostracism)로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서 자신과 판정자와의 인적 연계를 분쟁당사자에게 부여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담당한다.²⁾ 환언하자면 종래의 집단적 공유의식을 당사자와는 절연시킨 채, 자신과 판사, 자신과 검사와의 귀속적 관계로 치환함으로써 역시 마찬가지로 특수주의적 법배려를 얻어 내는 것이다. 소위 전관예우가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는 전관예우를 받지 못하는 변호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의 도식이 형성된다. ‘인사치레’ 등의 행태는 그 진위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특수주의적 법배려가 가능한 상황을 당해 변호사가 형성할 수 있는(또는 그를 가장하는) 소송상태를 암시하는 것이다.³⁾

결국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체계는 철저하게 법에 대한 도구주의적 사고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국가는 국가대로 권위주의적 권력이 통용되는 형식으로서 법을 운용하였으며, 법조는 법조대로 정치권력의 주변부를 이루면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동시에 국민들 역시 이러한 권력으로서의 법체계에 저항하지 못한 채 특수주의적 배려의 수단으로 법과 법조를 이용해 왔다. 이런 법조관료주의의 구조는 몇 가지 점에서 법률서비스의 공급체계를 왜곡시키게 된다.

첫째, 법률서비스를 단순히 송무사건과 관련하여 규정하게 된다. 법조관료들의 권력기반이 국가의 법권력에 있음으로써 이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2) 법조브로커는 또 다른 지대추구자이다. 그들은 rent를 제공하는 변호사들에 붙어 일반인들에게는 차단되어 있는 이 특권적 서비스의 소재를 상품화하여 법률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초기단계의 지주라 할 것이다.

3)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수입료가 ‘지나치게 비싼’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변호사의 업무가 지대추구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당연히 그 보수 역시 지대로 책정된다. 즉,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 비하여 보다 우월한 지위에 서기 위한 일종의 잉여의 권력을 부여하는 또 다른 권력자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만큼, 그 권력의 차이가 바로 변호사 보수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요컨대 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 혹은 그 서비스 비용에 의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주의적 권력의 구매비용이다.

오히려 국가의 법권력에 봉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지대(rent)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구하였다. 우리 사회에서의 법률서비스가 송무사건으로만 구성되고 있음은 이 때문이다. 권력의 한편에서 그 특수주의적 배려를 이끌어 내어야 하는 법조의 역할기대에서 소송사건은 국가권력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최적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환언하자면, 법관·검찰관이 가지는 법권력을 같은 동료 집단으로서의 변호사가 공유하는 구조가 우리 사회에서의 법률서비스가 송무사건에 편향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준사법기관 혹은 사법의 보조자로서 관료화되는 한편,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봉사자나 동급자가 아니라 상급자 내지는 그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되어 버린다.

둘째, 이로 인하여 변호사의 역할은 진정한 의미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권력을 대행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구축된다. 즉, 변호사가 제공하는 업무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집단 혹은 그로 대표되는 법조인 집단이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전도된 주장이 통용된다. 전 세계에서라도 보기도물게 채택되고 있는 사법시험 합격자수의 통제제도라든가 변호사의 숫자는 변호사의 적정수입을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은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변호사의 독점적 지위와 변호사의 공적 기능을 동일시하는 왜곡현상도 발생하게 된다.

셋째, 송무사건의 경우에도 법정 출입 등 법관 혹은 검찰관 등의 사법관과의 직접적인 대면관계, 즉 법조관료로서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그 권력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법률서비스의 개념을 구성한다. 따라서 고객을 면접하고 상담하며 법률적 조언을 하는 역할이 아니라 법관과 검찰관을 만나서 청탁하거나 ‘변론’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이에 단순사건이나 그런 역할에 값하지 못하는 소액사건 등은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라 유사법조직인 법무사의 업무로 내몰리게 된다.

넷째, 법조관료 체제가 가지는 법조충원·양성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법률지식 외의 다른 사회생활지식을 반영하는 법률서비스 개념을 창출해 내지 못한다. 예컨대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 문제나 세무, 노무 등 전통적인 보통법학 — 관료법학 — 적 개념이 포섭하지 못하는 법영역에 대하여는 전문가로서의 속성을 포기한 채 여타의 직업 —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 등에 일임해 버리는 양상이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새로운 법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문화, 오락, 환경, 복지, 인권 등 다양한 수요조차도 변호사들이 담당하지 못한 채 유사법조나 타전문직에 일임하게 된다.

다섯째, 더불어 법률서비스가 오로지 국내실정법의 영역에만 한정됨으로써 새로운 경제체제의 변화에 부응하는 업무영역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국제통상법이나 외국법제에 관한 기업의 수요는 대부분 국내변호사의 업무소관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로펌의 법률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시장이 미국의 법제에 종속되는 양상까지도 초래하게 된다.

여섯째, 이러한 문제점들은 총합하여 우리 사회에 심각한 법의 공동(空洞)지대를 만들어 내게 된다. 무변론이나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부재현상은 그 한 예에 불과하다. 금융·통상·문화·인권 등 법의 지배 혹은 법의 통제가 필요한 공간에서 막상 이에 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과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은 그 자체로 법치의 손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정의감정의 훼손과 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은 법조인으로 하여금 법률서비스에 대하여 스스로 소극적으로 개념화하도록 강요한다. 다양한 사회생활영역에서 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조인들이 적극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창출하기보다는 주어진 법률서비스 수요의 범위 안에서 자신이 익숙

한 업무에만 안주하게 함으로써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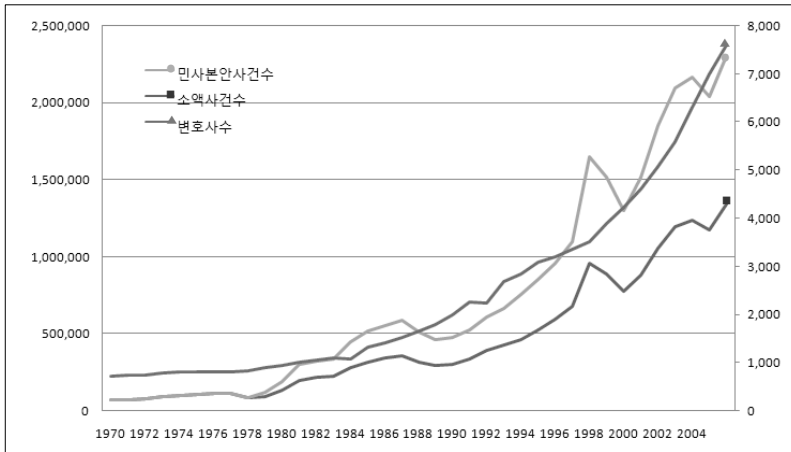
2. 법률서비스 수요의 변화 — 송무사건의 추이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상과 같은 법조관료 체제 및 이에 의거한 법률서비스 시장의 왜곡현상은 오늘날 심각한 구조변혁을 경험하고 있다. 소송사건 수의 엄청난 증가추세와 더불어 각 법영역에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다양한 법률수요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 나라의 법률서비스 수요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법체계의 구성이나 발전과정이 각 국가나 사회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에 종속되는 법률서비스의 의미와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수요가 어떠한 양상으로 현현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구성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범주들이 규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량지표로 전환하여 구체적인 수요량을 측정해 내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추이를 송무사건의 변화추세와 법무 관련 사업에 대한 경제통계 등을 중심으로 추정해 보기로 한다.

우선 우리 법원에 접수된 민사본안사건의 수(전심급 기준)는 <그림 1>에서 보듯 1970년에 68,847건에서 2003년 1,191,726건으로 33년간 17.3배에 이르는 증가추세를 보인다(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1,339,090건으로 19.4배). 같은 기간 동안 일본의 경우에는 174,013건에서 516,509건으로 약 3배 정도의 증가추세만 기록하고 있음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소송사건의 증가추세는 실로 엄청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소송의 증가추세는 여러 가지의 요인들로 설명가능하다. 우선 1980년대를 전후하여 우리 사회가 고도성장단계로 접어들면서 도시화와 산업화가 본격화되었음은 그 한 요인이 된다. 종래 소송을 대체하던 비



〈그림 1〉 민사본안사건 및 변호사 수의 증가추세

공식적·비법적 분쟁처리 기제들이 점차 비인격화·익명화·공식화하는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소송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당시 신용카드, 할부제 등 다양한 가계신용제도가 도입되면서 가계경제가 시장경제로 급격하게 포섭되었음을 들 수 있다. 더불어 1980년대 말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 소위 토건국가적 개발정책으로 인한 부동산투기 열풍들은 또 다른 소송요인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민사본안소송을 구성하는 사건 종류들의 변화추세에서 더욱 명확해진다.⁴⁾ 민사본안소송은 2002년(220,471 건)을 기준으로 할 때 2006년(321,399건)에는 약 146% 정도 증가한다. 여기서 이런 증가추세를 주도하는 것은 부동산소유권 관련 소송(160.4% 증가), 제삼자 이의소송(153.8% 증가),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159.7% 증가), 임금청구소송(180.9% 증가)이며, 손해배상사건의 경우 공해소송(541.7%)이나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181.2% 증가) 등이 급증세를 보인다. 반면 구상금(116.1%)이나 대여금(93.3%), 신용카드대금(15.3%), 매매대금(116.1%), 어음수표(85.9%) 등의

4) 대법원의 사법연감의 통계방식이 2002년을 기점으로 바뀌어 그 이전의 통계를 활용하기 어렵다.

소송은 거의 정체하거나 현저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2006년 들어 양수금청구소송이 급증(725.5%)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보다 주목하여야 할 사실은 2002년까지만 해도 특별한 분류대상이 되지 못하여 ‘기타’ 항목으로 처리되었던 공사대금·사해행위·양수금·임금 등의 항목들이 평균치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의 ‘기타’ 항목 또한 165.8%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래 정형화되지 못한 소송사건의 유형들이 여타의 유형화된 사건들에 비하여 더욱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우리 사회에서의 법률서비스가 점차적으로 비정형적 유형의 업무로까지 확장되면서 다양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의 <표 1>은 주요한 로펌들이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주요 업무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각 로펌들은 적게는 27개, 많게는 42개의 법률사무분야들을 내걸고 자신의 업무영역들을 조직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날로 다양해지는 법률사무의 영역들은 여기서 재확인된다. 실제 이들 로펌들에게는 전통적인 법률사무인 소송이나 중재는 단순히 하나의 업무단위로만 분류되고 있을 뿐이며, 보다 많은 조직들이 기업법무, 국제거래, 금융·증권 등에 분산되어 있다.

1999년을 전후하여 변호사업의 조직형태가 급격히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은 이런 법률사무의 다양화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림 2>와 <그림 3>은 이와 관련된 것이다. <그림 2>를 보면 변호사업의 경우 1993년부터 1999년까지는 개인사업체와 법인사업체의 숫자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1999년 이후부터는 법인사업체가 약 5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 3월

5) 실제 2007년 11월 30일 법조언론인클럽 주최 토론회 “법률시장 개방 앞둔 국내 로펌의 대응과 전망”에 참석한 6대 로펌 대표들은 법률시장 개방에 즈음하여 그 대응 방안으로 한결같이 로펌의 대형화를 들고 있다. 적어도 200명에서 500명 수준의 변호사를 확보함으로써 로펌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경영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는 1990년대 미국의 로펌들이 M&A 등의 방법을 통해 그

〈표 1〉 주요 법무법인들이 제시하는 업무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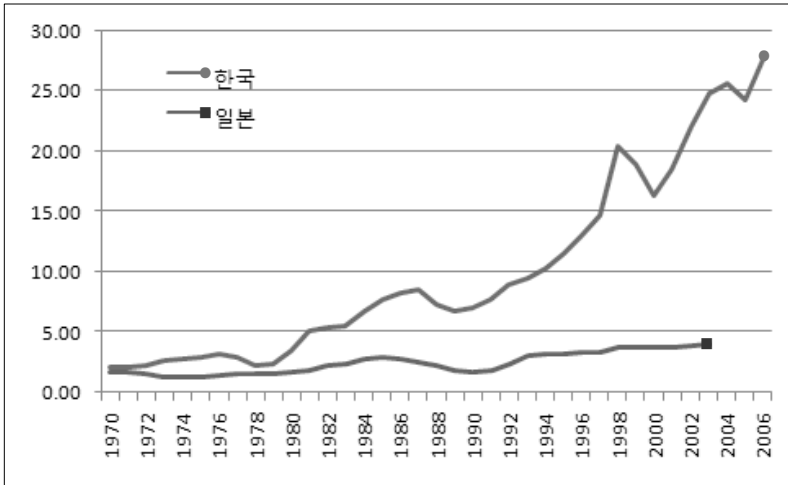
법무법인	주요 분야	세 부 분 야
김&장 (42개)	기업법무 및 국제 거래 업무(15개)	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소유와 경영, 부동산/건설/SOC, 인사관리/노사관계, 기업도산 및 구조조정, 환경, 국제무역, 제조물책임, 외환거래, 해외투자, 민영화, 정보통신/방송, 전자상거래/소프트웨어, 보건/의료, 공정거래
	금융 관련 업무 (18개)	금융기관별 : 은행/금융지주회사, 증권회사, 증권투자신탁운용회사,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자산운용회사, 증권투자자문회사, 보험회사, 선물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리스사, 벤처금융회사 특수금융분야별 : 국제금융, 부실채권의 관리 및 처분, 자산유동화, 프로젝트 파이낸싱, 파생상품거래, 해외증권발행, 기업공개 및 해외상장
	소송·중재 (9개)	금융 관련 소송, 증권, 인수합병(M&A), 회사 관련 소송,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대형 손해배상 및 제조물책임 소송, 기업업무 관련 형사소송(White Collar Crime), 공정거래·노동·조세·행정·해상 등 각 전문분야 관련 소송, 국제소송 및 국제상사중재
태평양 (27개)	국제거래 및 기업 법무(19개)	M&A 및 기업구조조정, 벤처기업 설립 및 자문, 증권업무, 정보통신 및 언론, 외국인투자 및 합작기업 자문, 해외투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노동관계 및 근로계약, 무역·운송·보험, 환경, 지적재산권, 건설부동산, 조세, 국제소송, 국제중재, 기업회생 및 파산, 중국, 일본, 스포츠·연예
	소송업무(16개)	일반민사분쟁, 일반금융분쟁, 상사분쟁, 기업경영권 및 M&A 관련 분쟁, 보험·해상·항공클레임, 건설·부동산·재개발 관련 분쟁, 조세·행정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지적재산권분쟁, 파산·회사정리·회의 관련 분쟁, 노동·근로 관련 분쟁, 언론보도 관련 분쟁, 환경 및 의료 관련 분쟁, 국제소송, 국내외 국제중재 및 판결의 승인집행
	지재권업무	
	공증업무	
화우 (39개)	기업법무·국제 거래(16개)	회사법·회사설립·경영, M&A, 도산 및 구조조정, 해외투자, 무역·통상, 외국인투자 등, 공정거래, 중구법, 노동·산재, 해상·항공·보험, 제조물책임, 국제계약, 벤처기업, 부동산·건설, 특수판매, 방송·정보통신
	소송·중재 (10개)	민사일반, 형사, 가사, 보전처분, 강제집행, 신탁, 중재, 국제소송, 의료, 방송·언론
	조세·행정(5개)	조세·행정, 일반행정 및 과징금, 토지수용, 건설·재건축, 환경
	금융·증권(4개)	금융일반, 선물거래·옵션·스왑, 주식발생·기업공개, 자산운용
	지적재산권(4개)	지적재산권보호, 부정경쟁방지, 전자상거래, 엔터테인먼트

외형을 확장하였던 상황과 일견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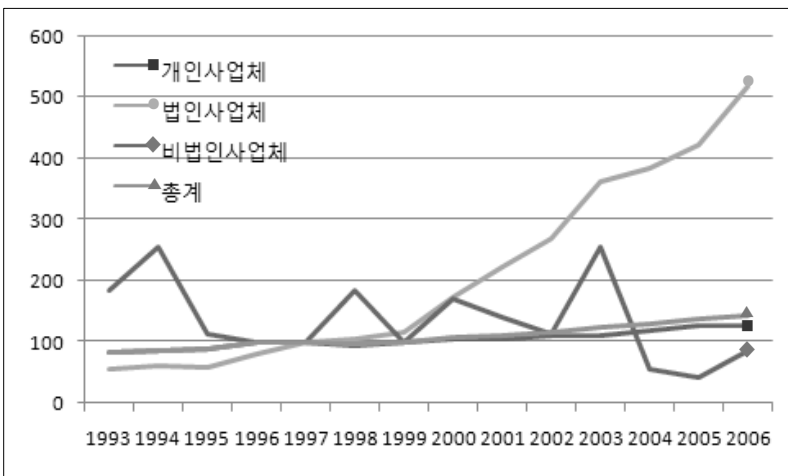
표 1 계속

법무법인	주요 분야	세 부 분 야
광장 (38개)	기업법무 및 국제 거래(11개)	기업인수합병, 노동, 공정거래, 조세, 환경, 도산, 정보기술 및 통신, 통상, 해상항공,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 중국
	금융(10개)	자산유동화를 포함한 설계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 및 사회간접자본(SOC), 항공기 및 선박 금융, 금융규제 및 금융 관련 법규의 준수, 자본시장 및 증권거래, 은행여신거래/신디케이션론, 기업인수금융, 부동산금융, 재무구조조정, 파생금융거래
	소송 및 중재 (7개)	인수합병/도산소송, 금융/기업법무소송, 기업형사소송, 행정소송, 건설부동산, 국제중재, 가사
	지적재산권 (10개)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실용신안, 의장) 관련 소송, 지적재산권 관련 출원, 등록 및 관리, 저작권 등록 및 관련 분쟁, 컴퓨터프로그램·반도체칩의 보호, 도메인네임의 등록·관리 및 분쟁,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라이선스 및 프랜차이즈,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세종 (37개)	M&A·투자(4개)	기업인수·합병, 적대적기업인수, 외국인투자·합작, Venture Capital
	기업법무 및 국제 거래(9개)	공정거래, 방송정보통신, 노동, 구조조정·기업회생·파산, 에너지 환경, 부동산, 연예·스포츠, 국제통상·관세, 일반 기업자문
	소송·중재 분쟁 해결(9개)	조세·행정 분쟁, 공정거래 분쟁, 부동산·건설 분쟁, 노무 관련 분쟁, 증권·투신 관련 분쟁, 은행·금융 관련 분쟁, 적대적 M&A 등 경영권 분쟁, 지적재산권 등 첨단기술 분쟁, White Collar·형사 분쟁, 국제중재
	금융(9개)	금융산업 관련 인허가 및 감독법규 자문, 금융지주회사·금융기관 M&A 및 인수금융, 기업공개 및 증권발행, 외국환·무역금융·차입 기타 기업금융 일반, 파생금융거래, 자산유동화 및 구조화금융, 부동산 취득·개발 파이낸싱, SOC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운용 및 간접투자·PEF 등
	지적재산권	
	보험	
	세무	
	중국	
	일본	
	베트남	

30일 현재 전국의 변호사 8,181명 중 약 31%에 해당하는 2,506명의 변호사가 370개의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다.(물론 여기에는 250여 명의 변호사를 둔 김&장은 제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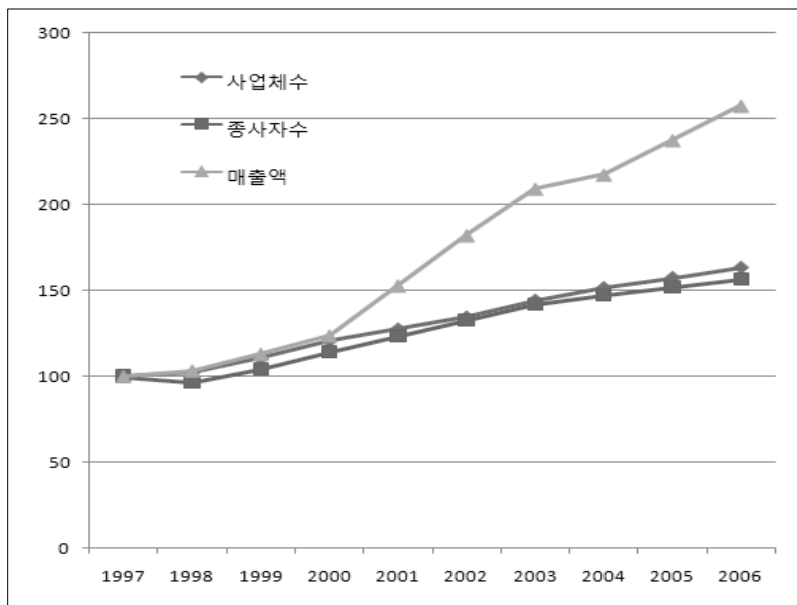
〈그림 2〉 인구 1,000명 당 민사본안사건 접수건수 추이



자료 : 통계청

〈그림 3〉 변호사업 사업체종류별 변화추세(지수 1997=100)

또한 <그림 4>는 이를 다시 한 번 입증한다. 이에 의하면 법무·회계부문에서의 매출액은 1997년의 2조 2,352억 원에서 2006년의 경우 5조 7,578억 원으로 258%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법무·회계부문의 조



자료 : 통계청(2001년은 추정치)

〈그림 4〉 법무·회계업종 발전추이(지수 1997=100)

직이나 구성 자체의 변화에 비해 시장의 규모 자체가 급진적인 속도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이 중 변호사업의 매출액은 2006년의 경우 그 25.4%인 1조 4,627억 원이다.(통계청에서 변호사업의 매출액을 별도로 산정, 공포한 것은 2006년부터이다.)

또한 그동안 미국 법률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소위 Model 1)도 캐나다·프랑스·독일·영국·일본 등 5개국과의 무역량만 보더라도 대략 1998년 17억 7,300만 달러에서 2003년 25억 8,400만 달러로 증가, 약 15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미간 법률서비스 무역거래 규모 역시 1995년 약 3,600만 달러에서 2003년 7,800만 달러의 수준에까지 상승하였다.

<표 2>는 이런 국제업무영역에서의 법률서비스 수요에 대한 주요 로펌들의 대응양상을 보여준다. 물론 외국변호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법률업무에 종사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그

〈표 2〉 대형 로펌의 소속변호사 구성

	한국변호사 수	외국변호사 수	외국변호사 자격소지 한국변호사 수	계
김&장	175	7	37	182
태평양	104	23	25	127
세 종	91	19	34	110
광 장	112	20	42	132
계	482	69	138	551

출처 : 이국운(2007,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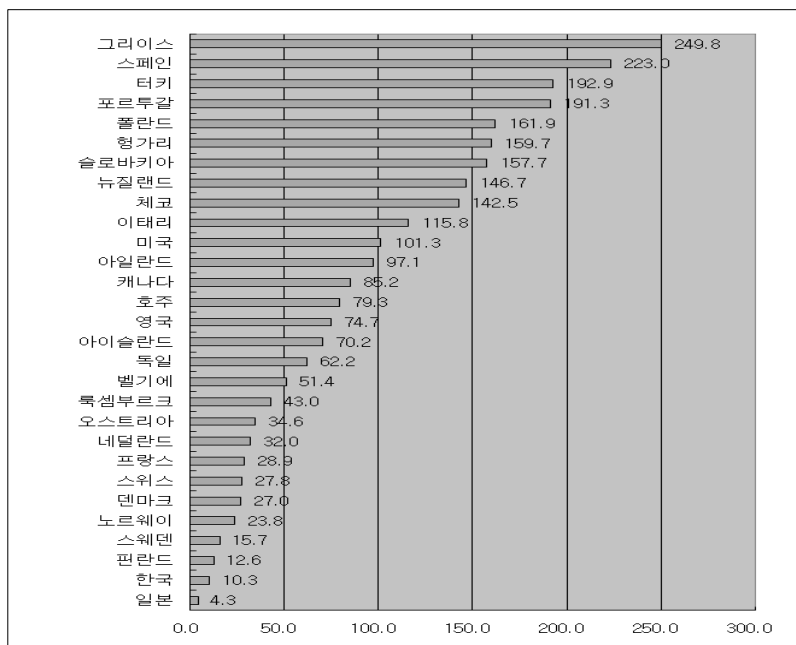
것이 ‘국제변호사’로서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런 추세만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국제법률업무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에 이르고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

3. 현 법률서비스 시장의 문제점

이런 제반의 통계치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그 질과 양에 있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정도로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전반적으로 민주화 등 사회변화 및 인권·권리의식의 성장이라는 시대적 경향을 반영함과 더불어 경제성장 그리고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양하고도 다층적인 수준에서 확대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에 대한 어떠한 체계적 대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발생한다. 법률서비스의 공급체계가 법조관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장악됨으로써,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여야 할 시장 그 자체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것이다. 즉, 이들이 법률서비스 시장 자체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면서 법률서비스의 질과 양 모두를 스스로 결정하는 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시대의 변화에 조응하는 법률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메커니즘을 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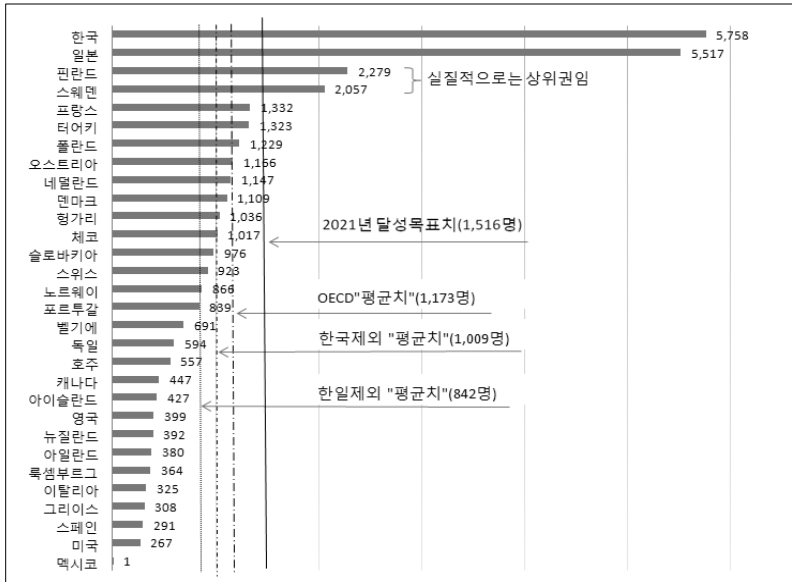
화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봉쇄되어 왔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변호사 적정수의 논쟁이다. 법률서비스 시장의 진입 장벽을 전유한 법조관료들은 다양한 이유로써 우리 사회의 변호사 수는 인위적으로 통제되어야 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의 두 그림⁶⁾에서 나타나듯 OECD 30개국 중에서 변호사의 독점권이 가장 강력하게 보장되는 양상으로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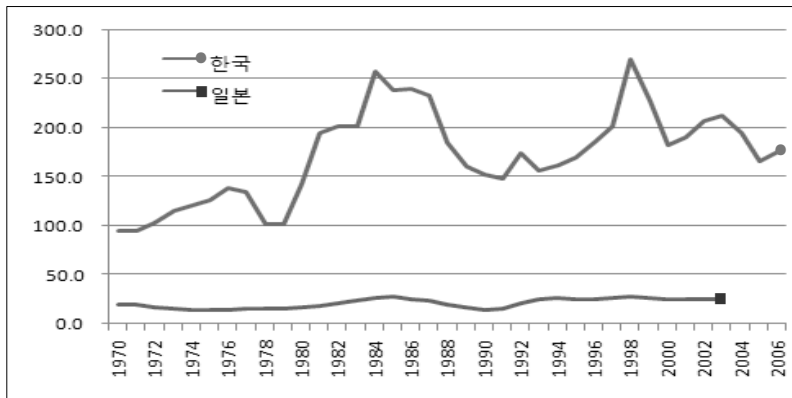


〈그림 5〉 GDP 10억 달러당 변호사 수

6) <그림 5>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경제 규모가 직접 법률서비스의 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 수준은 그 사회의 분쟁성향을 결정하며, 이 분쟁성향으로부터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한국의 변호사 수치가 일본보다 많다고 해서 한국의 법률서비스 공급이 일본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 일본은 한국에 비하여 소송성향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그림 6>의 경우 ㉠ 프랑스·스위스·벨기에·영국·그리스의 경우 인구(추계)수는 2005년치, ㉡ 오스트리아의 경우 변호사 5,201명 및 수습변호사 약 1,900명, ㉢ 폴란드의 경우 Legal Advisor 22,545명 포함, ㉣ 아일랜드의 경우 solicitor 약 10,000명 포함.



〈그림 6〉 변호사 1인당 국민 수



〈그림 7〉 변호사 1인당 민사사건 접수 건수

물론 이러한 사법체계에 대한 개선 혹은 개혁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노력들이 초기에는 정치권력의 욕구에 따라 변질되었고 최근에 와서는 보다 강력해진 법조인들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하여 좌절되고 있다. 1994년부터 시작된 대법원 및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사법개혁 논의나 1999년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및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대립, 2003년 이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 작업들은 그 핵심에 있어서는 의연히 법률서비스 공급체계의 재구조화를 향한 시민사회의 요청이 담겨 있는 것이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기득권을 주장하는 법조인 집단의 저항에 의하여 좌절되었거나 혹은 지체되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완강히 저지하였던 법조권력의 저항은 그 단적인 예가 된다.

III. 법률서비스 수급의 변동과 로스쿨

1.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와 교육이념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법조관료주의를 바탕으로 구축되었음은 단순히 법률가 집단이 관료화되면서 법을 독점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조권력을 구축, 국민 위에서 군림하게 되는 국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더불어 법률가의 양성과 충원과정까지도 국가가 독점하게 되면서 법학교육이나 법학 자체의 발전과정도 그에 종속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즉, 법학교육은 사법시험에 종속되고, 법학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험법학·수입법학·교과서법학으로 한정되거나 혹은 재판법·법관법을 중심으로 하는 도그마 중심의 탐구에 집중되는 편향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질과 양의 측면에서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법률서비스 혹은 법학적 탐구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기도 한다.

로스쿨제도는 우리 사법제도 및 법학교육체계가 가지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제2조(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를 요약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로스쿨은 ①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②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③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④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써 ⑥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을 그 설치 목적으로 한다. 물론 이런 교육이념은 애당초 사개위가 제시한 ⑦ 민주성의 가치관과 ⑧ “개방되어 가는 법률시장에 대처하며 국제적 사법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지닌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목표를 누락시킨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⑦과 ⑧의 교육이념이 무시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의 로스쿨제도가 지향하여야 할 목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거론되었다.

- ㉠ 사법의 민주화 및 법치의 실현
- ㉡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적·양적 개선
- ㉢ 다양한 법률서비스 수요에 전문적·효율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법률전문인의 양성
- ㉣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상응하는 보편적 법운용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
- ㉤ 사법시험제도의 파행적 운영으로 인한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체제의 비효율성, 비생산성 제거

이런 목표의 달성을 위해 로스쿨제도의 설계과정에서부터 사법시험을 변호사자격시험으로 전환할 것, 시험에 의한 충원이 아니라 교육에 의한 양성에 초점을 맞출 것, 학사 후 법학교육의 틀을 통해 다양한 전공의 소지자로 하여금 법학교육을 받아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법학교육은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실무와 법기술에 관한 교육 및 법조윤리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를 위해 법영역간·전공간·학제간 교육과 다양한 실습장치를 마련할 것, 보다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인적·물적 교육시설기준을 갖출 것 등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이런 점들은 일본이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법학교육의 내용에 두 개의 요소를 더하고 있음에서 재확인된다. 일본변호사연합이 마련한 법과대학원 평가기준에 의하면 로스쿨에서는 ①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책임 —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에 대한 자각과 법조윤리 및 ② 법률전문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7개의 스킬 — 문제해결능력, 법적 지식, 사실조사·사실인정능력, 법적 분석·추론능력, 창조적·비판적 검토능력, 법적 논의·표현·설득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교육할 것이 요구된다. 이는 종래의 법학교육의 틀로서는 급변하는 현대 후기산업화사회의 법률서비스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각과 더불어, 법학교육 혹은 법률전문가의 양성과정이 더 이상 도그마를 중심으로 하는 관료주의적 법학 혹은 재판법, 법관법에 한정된 법학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자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요컨대,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시점에 로스쿨제도의 도입이 논의되는 것은 지난날의 관료사법의 한계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작업이 선행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주화와 산업화의 병발로 인하여 새롭게 구성되는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을 제대로 담아내는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 체제를 구축할 것을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2. 타산지석 : 미국의 예

우리나라에서 로스쿨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1990년대를 전후하여 변호사양성시스템에 대한 개혁논의가 대두된 배경을 검토하는 것은 하나의 모델을 참조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남북전쟁 이후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1870년경 전문가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그 일환으로 로스쿨이 변호사양성시스템으로 정착되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소위 랑델식의 교육방법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교육 시스템은 종래의 도제식 교육방식을 탈피하고 법의 일반원칙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즉, 미국의 산업혁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단일시장을 구축하고자 이들을 강화된 연방정부시스템으로 뒷받침하려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상급심 판례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원칙을 도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이나 윤리·규율 등의 측면에서 동질적이고 통일적인 법률가 집단을 만들어 내고자 하였던 것이 이 작업의 주된 내용이기도 하였다. 물론 여기서는 선례(What did the judge speak?)만 암기하던 과거의 전통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법규칙을 창출하는(What did the judge have to speak?) 전문가로서의 법률가 양성이 요청되었다.

이런 경향은 법률가의 법창조력을 강조하던 1920년대 Reed Report에 와서도 계속 유지되다가 제2차 세계대전 후 특히 1980년대 들어와 격심해진 미국의 법조사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재편작업으로 이어진다. 즉, 1970년대에서 본격화되고 1980년대에는 일부 법률가 집단에 의하여 거의 위기국면으로까지 인식되기도 하였던 변호사의 급증현상과 이로 인한 법률서비스 시장의 구조적 변화,⁷⁾ 나아가 여성법조인이나

7) 그 예로 ① Lawyers for the Poor, Services for Persons of Moderate Means(Legal Clinics), Advocates for Group Legal Rights 등의 새로운 법률서비스 유형의 등장, ② 대형 및 중형 Law Firm의 증가·확대, ③ 기타 in-House Counsel, Government Lawyers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소수자법조인의 증가 등 100여 년간 이어져 오던 전문가프로젝트 자체의 재검토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법률가의 성격이 점차 Law Business로 변화함에 따라 종래 통일적인 법률전문직으로 규정되었던 법률가 사회의 틀에 간극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법률가 집단의 윤리 확보 및 법률가 집단의 동질성을 계속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반작용을 야기하게 된다. 즉 법률가사회의 다양화·다원화 — 이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다양화, 다원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 에 대하여 대응하고 통일적인 법률가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률전문직 프로젝트의 연속적 이행을 강조하는 것이 그 골자를 이룬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개혁책으로 제시되었던 MacCrate 보고서(1992)는 이런 요청을 법의 일반성·과학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법실천에 있어서의 전문성 즉 “Acting like lawyers”를 목표로 하는 임상실습(clinic) 중심의 법학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실천해 내고자 하였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로스쿨은 단순히 법학교육만 실시하는 훈련장이 아니라 통일적인 법조 경험을 공유하게 하는 장(Law School as Unifying Experience)으로서 재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전문화·특수화됨으로써 법조사회의 분편화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Generalist로서의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써 통일적 법조사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즉, 그 보고서는 법지식과 더불어 법기술, 법조윤리를 법학교육의 중심영역에 놓고 이 교육과정은 “What he/she knows?”가 아니라 “What he/she do or How he/she acts?”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런 교육을 통해 로스쿨은 Specialist 양성보다는 법조인 공통의 행위패턴을 확립하여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법기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다. 보기 나름으로는 법률가사회에 새로이 진입하는 신참변호사에 대하여 “What do you know?”를 묻기보다는 “Why don’t you act?”를 외치며 로펌의 조직에 기계적으로 흡수되어 팀의 일원으로 행동할 것이

강조된다고도 할 정도로 법기술에 대한 교육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할 것이다. 이 보고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임상실습교육을 중심으로 10가지의 법기술⁸⁾을 체득하게 만들 것을 법학교육의 중심내용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⁹⁾

실제 이런 내용들은 미국의 변호사들이 진출하는 30가지의 대표적인 전문영역을 설명하는 자료들에서도 반복된다. 각 영역에서 대표적인 전문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각각의 전문·특수영역에서 필요한 법기술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목되었다.¹⁰⁾

〈표 3〉 30개의 전문변호사 영역에서 요구되는 법기술·자질

법기술	빈도	법기술	빈도
Writing	20	Creativity	8
Communication	20	Relationship Building	7
Negotiation	20	Knowledge of related Area	7
Keen Interest in/Passion for their Work	11	Oral Advocacy	7
Organization	9	Team Work/Leadership	6
Analysis and Problem Solving	8	Empathy with the Client	6
Interpersonal Skills	8	Flexibility to Work	5
Attentive to Detail	8	Good Judgment	4
Resourcefulness, Research, Ability to act as an advocate, Counselling, Marketing/Management			3

8) ① 문제해결(problem solving), ② 법적 분석·추론(legal analysis & reasoning), ③ 법정보조사(legal research), ④ 사실 조사(factual investigation), ⑤ 의사소통(communication), ⑥ 자문(counseling), ⑦ 협상(negotiation), ⑧ 송무 및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litigation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⑨ 법률사무의 조직 및 관리(organization & management of legal work), ⑩ 윤리적 문제의 인식 및 해결(recognition & resolving ethical dilemmas)

9) 실제 이런 현상은 법학교육의 새로운 비전(Common Professional Legal Studies)이라는 이름으로 법학교육의 혁신을 외치는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여기서도 법정보조사기술(Legal research skills), 의사소통기술(Communication skills), 협상기술(Negotiation skills), 사실관리(Fact management) 등 법기술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10) Lisa L. Abrams, *The Official Guide to Legal Specialties : An Insider's Guide to Every Major Practice Area*, The Barbri Group(Chicago), 2000에서 추출한 것이다.

현장에서 제시되는 법기술들은 엄밀히 그 내역들을 분류하면 MacCrate 보고서가 요청하는 법학교육의 대상으로서의 법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MacCrate 보고서는 미국 법률가사회의 위기국면의 타개를 그 전제로 삼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형 로펌들을 중심으로 하는 주류 법률가사회가 법학교육 전반에 대하여 제기하는 ‘실용’교육의 요청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미국의 변화요청이 우리의 경우에 전혀 낯선 것이 아니라는(혹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이미 실용성이 강조된 법학교육 자체도 지나치게 ‘이론중심적’ 혹은 ‘사변적’이라고 비판받고 그래서 법지식보다는 법기술의 교육을 선행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면, 그 전단계에서 관료주의적 법학에만 안주해 왔던 우리의 법학교육의 개혁요청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당연한 것이 된다.

3. 현실 : 한계

하지만 이런 목표는 제도의 도입 초기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 로스쿨 제도에 총입학정원제가 도입되고, 그것이 법조인 집단의 확장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한정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로스쿨제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그것은 총입학정원제를 취함으로써 고등전문직업교육체계에 어울리지 않는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조독점체계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법학교육 및 법조양성·충원에 있어서의 변혁의 가능성을 거의 배제하고 있다. 특히 현재 수준의 법률서비스 수요조차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2,000명의 총입학정원은 자유경쟁을 토대로 형성되는 시장적 효율성의 이점 정도도 확보하지 못하는, 극도의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 시중의 법률서비스 수요를 “찾아가는” 법률가 —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수요에 적합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관리하

여야 한다 — 가 아니라 “앉아서 기다려도” 충분히 수지를 맞출 수 있는 독점적 법률가체계를 만들기 때문이다.¹¹⁾

둘째, 로스쿨제도를 통해 양성하고자 하는 변호사의 상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이는 로스쿨법의 교육이념에서 나뉘어 정리되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이념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확정하지 못함으로부터 연유한다. 예컨대, 현재의 로스쿨제도는 법지식·법이론과 더불어 법기술의 교육을, 강단교육과 더불어 실습교육을 병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임상실습 등의 과정을 예상하고 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가출신 교수가 실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든지 클리닉 수준에서 학생들이 송무에 종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이론·지식과 실무·기술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확보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교육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함으로써 이런 교육방법들은 본질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셋째, 로스쿨의 교육과정은 변호사자격시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예컨대, 법률지식의 교육을 중요시한다면 변호사자격시험은 그에 맞추어 필기시험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임상실습을 중시할 것을 원한다면 변호사자격시험은 폐지되거나 실습에 대한 관찰평가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개추위는 현재의 변호사법이나 사법시험법에 대한 어떠한 개정안도 마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험방식과 내용에 대하여 간단한 골격조차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어떠한 교육프로그램도 그려낼 수 없는 지경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11) 더구나 이런 충입학정원의 제한은 로스쿨 상호간의 경쟁까지도 배제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로스쿨협의회에서 로스쿨입학을 위한 응시기회를 가군과 나군 각 1회로 한정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응시생들이 로스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면서 별다른 노력 없이도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상호 답합한 결과인 것이다.

아니라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안』의 경우 자격시험이 아니라 선발시험의 성격이 강한 일본의 신사법시험을 모방하는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런 우려는 더욱 악화된다. 시험과목을 무리하게 통합된 교과목으로 책정하면서도 그것을 7법을 중심으로 한 종래의 재판법·법관법을 중심으로 편제하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사법시험준비반으로서의 법과대학의 수준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법학교육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뿐이기 때문이다.

넷째, 최근 전 세계에서 법학교육의 개혁 방안으로 평생교육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즉, 대학의 학부과정-대학원과정 혹은 법조예비교육과정-자격부여-자격취득 후 교육과정 등 하나의 프로세스로서 법조인 양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로스쿨법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개념도 확립하지 않고 있다. 법조인으로서 받아야 하는 평생의 교육과정에서 로스쿨이 차지하여야 하는 부분과 대학의 학부과정이 차지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위과정을 법학전문석사과정과 법학전문박사과정으로 양분하고, 전자는 총입학정원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람에 소위 LLM과 같은 재교육 내지는 전문화교육의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고 있어 이런 시대역행적인 틀을 더욱 퇴행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런 한계는 그대로 로스쿨의 교육과정에까지 반영된다. 아직은 로스쿨의 가인가를 받은 25개 대학의 교육과정을 전체 정리하고 비교분석할 여건이 조성되지는 못 하였으나, 지금까지의 경과를 볼 때 대부분의 로스쿨에서 인가신청서에 기재한 교육과정들이 그대로 로스쿨의 교육과정으로 실천될 것인지에 대한 회의론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신사법시험을 모델로 한다고 알려지고 있는 변호사시험의 틀에 맞추어 7법을 중심으로 법이론이나 판례 중심의 교육이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불길한 예상은 여전히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¹²⁾ 실제, 변호사시험에 초점을 맞출 때 로스쿨의 3년간의 교육 과정이 90학점, 30여 개의 교과목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중 60~70학점 즉 22~25개 교과목 정도가 이 7법을 중심으로 짜여지지 않을 수 없는 체제가 되기 때문이다. 즉, 20~30학점 정도로는 다양한 법영역에 대한 교육은 차치하고서라도 가장 기본적인 법기술에 관한 교육과 임상실습, 심지어 사회봉사까지 처리해 낼 수는 없는 것이다.

4. 무엇을 할 것인가 : 당장 시급한 과제 두 가지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 로스쿨제도는 분명 우리 사회의 법수요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로스쿨제도가 운영되어 온 과정을 보면 이런 명제의 타당성에 대한 회의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의 도입을 뒷받침하였던 이념과 목표들이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득세하게 되는 제반의 기득권 주장에 의해 이리저리 변질되고 왜곡되어 더러 파행적인 모습까지도 보여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스쿨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과정에서 일본의 로스쿨 실패론이 거론되었던 것은 하나의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있었으되, 지금 그 시행단계에서 혹여 성급한 로스쿨 실패론이 거론된다면 그것을 배척할 수 있는 실존적 근거는 그리 만만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 된다. 제도의 도입취지와 현실 간의 간극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기 때문이다.

12) 이 불길한 예상을 가능케 하는 것이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총입학정원의 70~80% 수준에서 정한다고 하는 애초의 논의들이다. 만일 합격률을 70%로 하고 응시기회를 5년 이내 3회로 제한한다 할 경우 총응시생 대비 종국적인 합격률은 50% 수준(정확히는 약 42%)을 밑돌게 된다. 이렇게 될 때 로스쿨간의 합격률편차를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합격률이 10 내지 20% 수준에도 못 미치는 로스쿨도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많다. 로스쿨인가가 사실상의 특허제로 운영되었던 현재의 제도하에서 이런 '무능' 로스쿨이 등장하게 될 경우 인가과정에서 탈락한 대학교의 반발은 물론 기성의 로스쿨에 있어서도 합격률을 의식한 교육과정의 파행화는 명약관화한 미래가 된다.

그러면 어찌할 것인가? 과거를 돌이킬 수 없다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대처해야 할 사항이 법무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을 보다 바람직한 모습으로 정비하는 일이다.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 무어라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로스쿨 도입이 사법개혁의 한 틀 속에서 구상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에 부합하는 로스쿨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면 변호사시험법 역시 “시험이라는 점에 의한 선발”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선에 의한 양성”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의 신사법시험처럼 어려운 문제를 중심으로 떨어뜨리기 식의 시험이 아니라, 법률가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고 그 윤리적 의식 수준을 측정하는 『구획의 시험』 즉, 최소한의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만을 변별하는, 순수한 의미의 자격시험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의 덕목들 — 지금의 사법시험이 요구하는 수준의 깊이 있는 지식들 — 에 대한 것은 변호사시험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 개개의 로스쿨이 자신의 명운을 걸고 확보하여야 하는 교육의 지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로스쿨간의 경쟁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아니라 그 산출결과인 졸업생들의 취업과 진로, 보다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법조)사회에서의 명망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요컨대, 변호사시험은 법학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가양성과정의 한 단계 정도에서 그 성격이 규정되는 데 그쳐야 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도를 지나쳐서 로스쿨교육 그 자체를 규정할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 로스쿨제도는 더 이상 ‘성공’의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다. 아울러 로스쿨을 계기로 어렵사리 확보한 우리 법조사회에 대한 개혁의 가능성까지도 그대로 해소되고 말 것이다.

하지만 로스쿨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이 변호사시험의 제자리잡기에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엄밀히 보자면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성공에 대한 소극적 요인에 불과한 것이며, 정작 중요한 적극적 요인은

로스쿨 자체의 교육개혁이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이미 로스쿨 인가신청과정 혹은 그 이전부터 각 법과대학이 고민하였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고민의 성과들을 모든 법학교수들과 모든 법률가들이 공유하면서 보다 수월성 있는 교육체제로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부연하자면 사법시험에 법학교육이 종속되었던 결과로 각 교과목의 교과서들은 경쟁적으로 두꺼워지고, 그럼에도 학생들은 “단권화”를 외치며 문제집에만 탐닉하는 우를 재현하거나, 혹은 수없이 쏟아지는 법원·헌재의 판결들을 사례연구 혹은 사례 중심의 모범답안 구상의 명목으로 무차별적 소개로 일관하면서도 무엇이 리딩케이스이며 무엇이 그 변형판결인지, 무엇을 가르쳐야 하며 무엇을 비판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법학계의 합의조차도 만들어 내지 못하였던 과오를 다시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¹³⁾

실제 로스쿨 3년 90학점의 법학교육체제는 보기 나름으로는 상당히 긴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독서력이나 이해력이 학부생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그에 걸맞은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편성한다면 로스쿨의 3년 과정에서 소통되는 정보의 양은 엄청난 수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이 중구난방으로 펼쳐지면서 교육내용과 과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통일적인 변호사상에 대한 기본적 지향을 상실한 채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무엇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인식 없이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면 3년 90학점의 수업과정은 지나치게 짧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론, 저런 반론을 끝도 없이 펼쳐면서 한 세기 전의 다른 나라의

13) 이 점에서 2007년 4월 법학교수회가 주관하였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연구」 프로젝트가 일회성의 표피적인 연구검토에 머물렀던 것이 아쉽다. 각 전공영역별로, 그리고 전공영역 간에 법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보다 전향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실제 이제 새로이 구성되는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무엇보다도 우선하여야 할 과업이 바로 이런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관심사를 마치 지금의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론인 것처럼 소개하거나 법관들이 아무런 이념지향도 없이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내린 판결을 마치 중대한 선례나 되는 것처럼 반복 암송하는 교육으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가르쳐도 또 가르칠 것이 나오는 무한반복의 상황만이 계속될 뿐인 것이다.

IV. 나가면서

하나의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초입에, 그것도 아직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사회적 변화가 그 제도에 미친 영향이라든가, 혹은 그 제도가 사회적인 요청을 반영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하기란 쉬운 작업은 아니다. 대부분의 언술들이 수많은 가정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그 가정과 분석의 결론 간에 개입할 수 있는 수많은 요인들을 괄호 속에 묶어 둔 채 제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로스쿨제도의 의미는 적지 않다. 그것은 이 땅에 권위주의 체제가 본격화되는 1973년 이래 지속되어 온 사법시험-사법연수원의 법조관료체제에 대한 중요한 변화이자 변혁을 향한 하나의 기회를 제공한다. 혹은 후기산업화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가 내뿜는 다양하고도 다원적인 법률서비스 수요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반응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주화와 산업화의 병발 추세를 거스르는 기득권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 있다. 물론 그 저항의 주체는 기존의 법조인 집단일 수도 있고 기존의 법학교수 집단일 수도 있고 심지어 기존의 학벌 집단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저항세력이 누구든 이미 길은 시작되었다.

엄밀히 보자면 로스쿨제도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동력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변화를 반영하는 결과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사회의

법체계는 이미 변화하였거나 혹은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국제변호사’라는 한국 고유의 직업 집단이 이미 형성되고 있고 『공감』이나 『금속노조 법률원』과 같은 — MacCrate 보고서 식의 논조에 의하면 — ‘이질적인 변호사 집단’도 이미 하나의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좋은 변호사를 판단하는 기준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에서 고득점을 한 사람 혹은 로열 로드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기준에서부터 “법률과 소송 지식의 실력이 있고 IT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고객들에게 자상한 법률서비스를 하는 변호사”¹⁴⁾로 이전하는 경향 또한 두드러진다. 로스쿨은 이런 변화의 한 결과일 따름이다. 사정이 그렇다면 기득권세력의 저항은 — 그것이 무엇이든 — 시행착오의 한 요소에 불과할 뿐, 이 흐름을 바꾸는 동력이 되지는 못 한다. 오직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능동적인 개혁의 의지와 그것을 앞서 실천하는 자기희생이 필요할 따름이다.

(투고일 2008년 11월 30일, 심사일 2008년 12월 20일, 게재확정일 2009년 2월 10일)

주제어 : 법률서비스, 로스쿨, 변호사

14) 장대성, “한국 변호사 서비스품질 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19권 제6호, 2006, 2585면. 이 연구에 의하면 “고객들은 고위 판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을 변호인 선임시 중요시 여기나 그들로부터 만족을 많이 못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602면.

[Abstract]

The Relation between supply and demand of Legal Services and its Influence on the Law School

Sang-Hie Han*

In most cases, the legal system of modern society is run by a specific person who is specialized as a group of business that called 'legal professions'. Lawyers who include judges and prosecutors can be found anywhere is controled by the assembly, the administration or the other law. Lawyers are guaranteed a monopoly status by state power and is the upper socioeconomic classes. Thus they shall enjoy the privileges compared to the general public.

Legal services premise generally a legal action by nation. It is not a general service, but a kind of exercises of public power. And it also takes a role as a mediator between the power of state and people's rights and obligations.

In Korea the law school is a new system of lawyer education. And will produce many lawyers of distinguished talent. It means that it overcomes the system of law bureaucrats which intent to make a formal and monolithic application of the law, and that it can be the conversion into a various and plural legal system. But on the other hand, such a changed system will be worried that it becomes a mutation encroached by the vested rights of Law Bureaucrats.

* Professor, College of Law, Konkuk University

In this paper I study what the vested rights is, how the new legal system settles down, what new problems are derived from that, and what we should do to overcome them?

Key Words : legal service, law school, lawyer